

대체복무제도 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1. 취지와 목적

지난 1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한국 사회의 인권현실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지표였다. 가려진 곳에서 60년 동안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지켜온 병역거부자들의 얘기는 전쟁과 살육으로 얼룩진 21세기 세계적 현실에서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의 실천은 감동적인 무언가를 던져주었지만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을 놓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작년 이맘 때 몇몇 국회의원들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움직임이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것은 그 하나의 예이다. 하지만 최근 한겨레신문 등의 매체들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찬성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올 2월 초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병역거부권을 홍보하고 알려나가는 활동과 함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동시에 각 국가별 그리고 한국의 병역법을 연구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체복무제도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도 벌여왔는데 지난 4월 25일 연대회의 내부 공청회를 거쳐 드디어 대체복무제도 입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입법안은 크게 기존 병역법 개정안과 새롭게 특별법으로 제정된 대체복무요원관정절차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의 전체적인 구성은 기존 병역법의 대체복무제도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구성하려 노력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세계적 대체복무 추세를 반영하면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였다.

2002년이 월드컵과 각종 선거, 아시안게임 등으로 연말까지 시끄럽고 바쁜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입법을 위한 추진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민생현안이나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모쪼록 이번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체복무제도 법안 마련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좋은 토론을 통해서 보다 알찬 대체복무제도 법안으로 다듬어지길 바란다.

2. 때와 장소

때 : 2002년 6월 27일 (목) 낮 2시부터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강당

주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 + ?

3. 일정

사회 : 한홍구 교수님 (성공회 대학교)

대체복무제도 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1. 취지와 목적

지난 1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한국 사회의 인권현실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지표였다. 가려진 곳에서 60년 동안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지켜온 병역거부자들의 얘기는 전쟁과 살육으로 얼룩진 21세기 세계적 현실에서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의 실천은 감동적인 무언가를 던져주었지만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을 놓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작년 이맘 때 몇몇 국회의원들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입증책임이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것은 그 하나의 예이다. 하지만 최근 한겨레신문 등의 매체들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찬성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올 2월 초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병역거부권을 홍보하고 알려나가는 활동과 함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동시에 각 국가별 그리고 한국의 병역법을 연구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체복무제도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도 벌여왔는데 지난 4월 25일 연대회의의 내부 공청회를 거쳐 드디어 대체복무제도 입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입법안은 크게 기존 병역법 개정안과 새롭게 특별법으로 제정된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의 전체적인 구성은 기존 병역법의 대체복무제도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구성하려 노력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세계적 대체복무 추세를 반영하면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였다.

2002년이 월드컵과 각종 선거, 아시안게임 등으로 연말까지 시끄럽고 바쁜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입법을 위한 추진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민생현안이나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모쪼록 이번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체복무제도 법안 마련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좋은 토론을 통해서 보다 알찬 대체복무제도 법안으로 다듬어지길 바란다.

2. 때와 장소

때 : 2002년 6월 27일 (목) 낮 2시부터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강당

주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 + ?

3. 일정

사회 : 한홍구 교수님 (성공회 대학교)

2시~2시 20분 : 사회자 인사말과 소개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회적 의의 소개)

2시 20분~2시 40분 : 발제1 (병역법 개정안, 박서진 변호사)

2시 40분~3시 : 발제2 (대체복무요원관정절차법안, 이재승 교수)

3시~3시 20분 : 휴식

3시 20분~4시 35분 : 패널토의 (각 패널 당 10분씩)

- 민주당 의원
- 김원웅 의원 (한나라당)
- 민주노동당
- 국가인권위원회
-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혹은 보건복지부
- 국방부
- 대만 국회의원 (치엔시치에 의원)

4시 35분~5시 30분 : 자유토론

7. 준비 계획

	섭외	홍보	준비
5월 24일~5월 31일	· 패널 섭외 완료 · 패널토론문 청탁 · 주최단체 섭외		
6월 첫째주		· 1차 홍보 · 포스터 제작	토론문 작성 현황 검토
6월 둘째주		· 2차 홍보 · 1차 보도자료 배포	· 토론문 수거 및 자료집 제작 · 현수막 제작 · 명패, 방명록 등 준비
6월 셋째주		· 3차 홍보 · 2차 보도자료 배포	마지막 점검
6월 18일	D-day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 개요

지난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수정하였습니다. 법안명칭도 바꾸었고,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해서 국가인권위법을 참조하여 약간 수정하였고, 신체검사시 대체복무에 대한 고지의무를 명문화하였고, 현역군인/예비군의 신청에 대하여 약간 손질하였습니다. 소송배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대체복무법안은 기본적으로 천정배의원안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몇 가지를 수정하였다. 천정배의원의 대체복무법안은 관할관청, 신청과 결정, 대체복무영역(시설)의 지정, 징계와 처벌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나 입법연구단에서는 이를 기본적으로 이원화시켰다. 대체복무를 병역의무의 이행수단으로 파악 하자는 근본전제에 출발하였다.

대체복무역을 병역의 일종으로 조정함으로써 병역법은 대체복무영역, 대체복무기간, 대체복무자에 대한 징계 및 처벌, 대체복무자의 각종의무부담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은 대체복무자 판정절차, 관할기관을 규정하는 순수한 절차법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독일의 병역거부법에 해당한다.

1. 대체복무위원회

1)관할기관

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대체복무판정과 대체복무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을 보유하며, 대체복무제도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책결정기능도 부여하였다. 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산하지방위원회로 구성하고, 군복무중인 자의 대체복무신청을 관할하는 지방위원회로서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2)보건복지부

대체복무판정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UN인권위원회의 취지를 존중하여 대체복무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병역의무를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국방부/병무청과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대체복무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소속하는 위원회로 하였다. 독일의 예가 이와 비슷하다.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국무총리 산하로 고려하였으나 대체복무영역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3)위원의 자격

대체복무위원의 자격은 비교적 개방적으로 설정하였다. 교수, 변호사, 성직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였다. 그러나 대체복무처분은 헌법상의 권리분쟁의 성격이 강하므로 위원장은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위원의 신분은 엄격하게 보장하도록 하였다.

4)중앙위원회---재심기관

중앙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총괄한다. 구체적인 판정을 제외하고 지방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의 대체복무판정에 대하여 재심기관으로 상정하였다.

5)지방위원회---일차적 판정기관

지방위원회는 대체로 지방병무청에 대응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지방위원의 자격, 지방위원회의 구성, 신분보장은 중앙위원과 같도록 하였다. 지방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일차적인 판정권을 갖도록 하였다. 지방위원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최소한의 판정권만 부담시켰다.

6)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소위원회

위원의 숫자는 중앙위원회는 7인으로, 지방위원회는 5인으로 하였으며, 사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게 하였다. 중앙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징계소위와 판정소위로 나누었다. 그러나 결정은 전체위원회의 명의로 하도록 하였다.

2. 대체복무자 인정절차

1) 신청사유

① 신청사유

대체복무의 신청사유는 포괄적으로 양심적 이유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는 종교와 관련된 양심이지만, 그렇다고 종교의 자유에 국한한다면 지나치게 협소하게 주류종교 집단의 반발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윤리적 양심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인권보호에 충실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양심에는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평화주의적, 인도적 양심까지 포괄하도록 하였다.

②전쟁거부정도

전쟁거부정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이 문제는 직접 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전(자위전쟁)과 불법적인 공격전쟁의 구별, 국내전쟁과 해외원정의 구별, 재래식전쟁과 핵전쟁의 구별, 동족전쟁과 이민족간 전쟁의 구별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모든 전쟁"을 거부하는 자만이 병역거부자로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도 이 점을 병역거부법에 명기하고 있다.

2) 신청기간

입영대상자는 징병검사후 입영기일 30일전까지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군인 기타 병역의무이행중인 자의 경우

복무중인 자는 입영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였다. 현역군인이 1년후에 대체복무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전투부문의 전환복무신청으로 인정하였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 특히 현역군인인 경우에는 매우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1년을 타협점으로 제시한 것이다.

4) 신청양식

독일의 경우는 대체복무신청서(관인서식), 이유서(자유서식), 이력서(자유서식)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표준양식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5) 심사절차의 엄격성문제

심사절차는 엄격하게 할 것인지 비교적 느슨한 서류심사로 할 것인지는 확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삼았다. 절차의 엄격성여부는 대체복무신청을 철저하게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 대체복무요원 정원제와 같은 군인력배치프로그램을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상관적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보았다.

6) 재심과 소송, 재신청의 제한문제

지방위원회의 각하 내지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하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중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소송의 배제문제는 삭제하였다. 또한 기각결정을 받고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추후 재신청의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과거의 신청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신청을 배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7) 결정시한

판정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군인, 여타 근무자, 예비군)인 경우에는 보다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일정한 유예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하였다. 군인인 경우에는 결정시까지 집총근무를 면제하였고, 예비군은 훈련소집을 유예하였다.

3. 경과조치

1)사면복권문제

병역거부를 이유로 처벌된 자의 범죄기록의 말소를 포함하여 사면복권을 규정하였다.

2)복역중인 자의 자동전환문제

병역거부를 이유로 형집행중인 자가 만기출소를 목전에 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된다. 일단 신청한 경우에만 대체복무인정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대체복무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완전거부자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중에 사면복권의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3)기간산입

구속되었거나 복역중인 자가 대체복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구속기간 및 복역기간을 대체복무기간에 산입하였다.

4. 완전거부자

완전거부자의 인권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점이지만 이 법에서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고려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정한 봉사활동을 보다 장기간 하도록 하는 대안(독일의 예)을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불가침적 인권인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병역의무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도입된 대체복무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체복무”라 함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상의 이유로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자에게 병역법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의무를 말한다.
2. “대체복무요원”이라 함은 이 법에 따라 대체복무처분을 받고 군사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사회적 영역에서 공익에 이바지는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집”이라 함은 대체복무처분을 받은 자에게 복무영역, 장소, 기간을 지정하여 대체복무활동을 개시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체복무시설”이라 함은 대체복무요원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공적 및 사적 시설 또는 활동단체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처분을 받은 시설을 말한다.
5. “비전투부문 복무”라 함은 군대조직 내에서 짐총근무를 배제한 복무를 말한다.

제2장 대체복무위원회

제3조(대체복무위원회) 이 법에 의한 대체복무관련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지방병무청 소재지별로 지방대체복무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역군인과 관련해서는 이를 관할하는 현역군인대체복무위원회를 중앙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제4조(중앙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철학·종교학·심리학·법학·사회학·정치학·평화학 등을 전공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종교계 또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4. 4급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변호사자격이 있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위원을 상임으로 보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판정소위원회와 정계소위원회를 둔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소위원회의 위원은 되며, 소위원회의 결정은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한다.

⑤ 중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소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은 위원을 사무국장으로 보한다.

제5조(중앙위원회의 권한)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대체복무 신청의 기각 및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
2. 현역군인의 비전투부문 복무신청의 기각 및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

3.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징계조치의 재심
4. 대체복무시설의 지정처분
5. 대체복무제도의 개선 및 제안권

제6조(중앙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①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④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와 결정) ①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지방위원회의 구성) ①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할지역의 인구수를 감안하여 위원수를 확대할 수 있다.

②위원은 제5조 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결정은 전체위원회의 명의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위원회의 회의와 결정에 대해서는 제6조와 제7조가 준용된다. 제6조 제4항의 퇴직결정은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⑤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위원장이 통괄한다.

제9조(지방위원회의 권한) ①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판정한다.

②위원회는 기타 업무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신청인과 친족·호주·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신청인의 참고인으로 된 경우

제1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운영세칙)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대체복무자의 판정절차

제14조(입영대상자의 신청과 고지의무) ①병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입영대상으로 판정을 받은 자는 신체검사일로부터 입영기일 30일 이전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위원회에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신청에 있어서 대체복무신청서, 이유서,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복무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신청에 대한 판정을 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한다.

④병무청은 신체검사에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인정절차, 복무내용을 수검자들에게 충분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병역의무이행중인 자의 신청) ①현역군인은 입영후 1년 이내에 현역군인대체복무위원회에, 여타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는 입영후 1년 이내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에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입영후 1년이 도과한 현역군인이 이 법의 취지에 따라 군대내의 비전투부문에서의 복무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③현역군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 또는 전환복무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부대장은 신청인의 집총근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④예비군은 기한의 제한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대체복무위원회에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대체복무를 신청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훈련소집을 유예한다.

제16조(결정) ①지방위원회 및 현역군인대체복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각하결정을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3. 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인정결정을 한다.

②인정결정을 내릴 때에는 당사자의 희망·자질·학력·적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체복무영역을 복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14조 1항의 경우에는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15조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 ①제15조 1항 1호와 2호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기각결정 또는 인정결정을 한다.

③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의 결정을 신청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④신청인은 제16조 제2항의 지정처분만을 독립하여 다룰 수 없다.

⑤위원회는 2항의 결정을 내린 경우 지체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8조(심사상의 조치) ①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

3.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

4.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는 것

②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요청이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88조 또는 군형법 제44조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있거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병역법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p>第2條 (定義) 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p> <p>9. "공익근무요원"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p>	<p>第2條 (定義) (중략)</p> <p>9의2. 대체복무요원이라 함은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동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p>
<p>第5條 (兵役의 種類) ①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4.12.31, 1997.1.13, 1999.2.5, 2000.12.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역:(생략) 2. 예비역:(생략) 3. 보충역: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제1국민역:(생략) 5. 제2국민역:(생략) 	<p>第5條 (兵役의 種類) (중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보충역: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u>대체복무요원</u>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현행법	개정안
<p>제5장 보충역의 복무</p> <p>제1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26-33)</p> <p>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34-35의2)</p> <p>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36-43)</p> <p>第42條 (公益勤務要員등의 服務期間短縮)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범위를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改正 1997.1.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역병의 복무기간단축으로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 <p>第43條 (公益勤務要員등의 實態調査)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지정업체등에 대하여 그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5></p>	<p>제5장 보충역의 복무</p> <p>제1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26-33)</p> <p>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34-35의2)</p> <p>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36-43)</p> <p>제4절 대체복무요원의 복무(43의2-43의4) (신설)</p> <p>第42條 (公益勤務要員등의 服務期間短縮)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또는 <u>대체복무요원</u>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u>대체복무요원</u>으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범위를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역병의 복무기간단축으로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 <p>(개정)</p> <p>第43條 (公益勤務要員등의 實態調査)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및 <u>대체복무요원</u>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지정업체등에 대하여 그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p>

현행법	개정안
	<p>제4절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신설)</p> <p>第43條의 2(代替服務要員의 編入)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체복무위원회로부터 대체복무 관정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한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p> <p>第43條의 3(代替服務要員의 業務) ①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 보호, 지원 등 군사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p> <p>②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복무하여야 한다.</p> <p>③보건복지부장관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교육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한다.</p> <p>④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 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p> <p>⑤대체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43條의 4(代替服務要員의 身上移動通報 및 處理)①보건복지부장관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명령 또는 정당한 복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대체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현행법	개정안
<p>第44條 (兵力動員召集對象) 병력동원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비역 2.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p>第49條 (兵力動員訓練召集對象等)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 또는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그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p>	<p>②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하고,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고처분하되, 1회 경고처분을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p> <p>第44條 (兵力動員召集對象) 병력동원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단,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 판정을 받은 사람은 소집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비역 2.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p>第49條 (兵力動員訓練召集對象等) ①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 또는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그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p> <p>②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병력동원훈련 소집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 보호, 지원 등 군사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법	개정안
<p>第53條 (戰時勤勞召集對象等) ①전시근로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4조 제2호의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지정에서 제외된자 2. 제2국민역(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 및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기술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p>第55條 (教育召集對象等) ①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에 대하여 60일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이내로 한다.</p>	<p>第53條 (戰時勤勞召集對象等) ①전시근로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4조 제2호의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지정에서 제외된자 2. 제44조 단서에 의해 병력동원소집대상에서 제외된 자 2. 제2국민역(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 및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기술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p>第55條 (教育召集對象等) ①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u>대체복무요원을 제외한 보충역</u>에 대하여 60일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u>보충역(대체복무요원 제외)</u>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이내로 한다.</p>
<p>第58條 (醫務·法務·軍宗將校등의 兵籍編入)</p> <p>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의무·법무 또는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치과의사 또는한의사자격이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 또는 승려로서 소속종교단체에서 그자격을 인정한사람 <p>(②항, ③항 생략)</p> <p>④제1항·제3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p>	<p>第58條 (醫務·法務·軍宗將校등의 兵籍編入)</p> <p>(중략)</p> <p>④제1항·제3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p> <p>다만, <u>군종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사에 반하여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없다.</u>(개정, 단서 신설)</p>

현행법	개정안
<p>第60條 (徵兵檢査 및 入營등의 延期)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사람 <p>②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9.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분야 우수자 	<p>第60條 (徵兵檢査 및 入營등의 延期)</p> <p>①(중략)</p> <p>②(중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대체복무위원회에 대체복무 판정 신청을 접수하여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사람(신설)
<p>第65條(兵役處分變更등)①현역병(제21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의 처분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의 연기나 해제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제2국민역으로의 편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3. 수형·고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p>②-⑦생략</p>	<p>第65條(兵役處分變更등)①현역병(제21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의 처분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의 연기나 해제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제2국민역으로의 편입을,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생략) 4. <u>현역 복무 중 대체복무위원회로부터 대체복무판정을 받은 자</u> <p>②-⑦ (생략)</p> <p>⑧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하며, <u>현역으로 복무한 기간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에 산입한다.</u>(신설)</p>

현행법	개정안
<p>第73條 (復學保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p>	<p>第73條 (復學保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u>대체복무요원</u>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p>
<p>第75條 (報償 및 加療)④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p>	<p>第75條 (報償 및 加療)④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또는 <u>대체복무요원</u>으로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p>
<p>第75條의2(災害등에 대한 補償)①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후략)</p>	<p>第75條의2(災害등에 대한 補償)①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또는 <u>대체복무요원</u>으로 복무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후략)</p>
<p>第88條(入營의 忌避) (내용 생략)</p>	<p>第88條(入營의 忌避) (내용 생략-공익근무요원과 동일한 내용)</p>
<p>第89條(公益勤務要員등의 代理服務) (내용 생략)</p>	<p>第89條(公益勤務要員등의 代理服務) (내용 생략-공익근무요원과 동일한 내용)</p>
<p>第89條의2(公益勤務要員등의 服務離脫) (내용 생략)</p>	<p>第89條의2(公益勤務要員등의 服務離脫) (내용 생략-공익근무요원과 동일한 내용)</p>